

문서번호	SLS-ESG-01
제정일자	2018.07.20.
개정일자	2023.09.22.
개정번호	1

# 협력사 행동규범

2023. 9. 22

(주)신화로직스

## 총칙

제1조. 목적	3
제2조. 행동규범 적용범위	3
제3조. 협력사의 책임	3

### 제1장. 노동·인권보호

제4조. 강제노동금지	3
제5조. 차별금지	4
제6조. 인권보호	4
제7조. 결사의 자유보장	4
제8조. 윤리적인 채용	4

###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 9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4
제10조. 기계기구 관리	5
제11조. 비상상황 대응	5
제12조. 사고관리	5
제13조. 안전진단	5
제14조. 보건관리	5

### 제3장. 환경

제15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6
제16조. 온실가스 배출량관리	6
제17조. 수자원관리	6
제18조. 대기오염물 관리	6
제19조. 폐기물관리	6
제20조. 화학물질 관리	7
제21조.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7

### 제4장. 윤리

제22조. 투명경영 반부패	7
제23조. 불공정 거래방지	7
제24조. 위조품 사용방지	8
제25조. 정보보호	8
제26조. 책임있는 원자재관리	8

### 제5장.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제27조. 담당자 선임	8
제28조. 위험점검	8
제29조. 교육 및 소통	9
제30조. 고충처리제도 운영	9
제31조. 규범준수	9
제32조. 공급망 실사	9

## 총칙

**제1조 【목적】** 신화로직스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진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행동규범의 실천으로 협력사의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윤리, 반부패,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분야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또한 협력사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고자 한다.

### 제2조 【행동규범 적용범위】

1. 신화로직스는 모든 협력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길 권고한다.

### 제3조 【협력사의 책임】

1. 신화로직스로부터 위탁받은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행동규범의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위험에 대한 개선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 계획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가 협력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본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사가 적절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화로직스와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 제 1 장 노동·인권보호

### 제4조 【강제노동금지】

1.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15세 이하)도 금지한다.
2.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3. 청소년 근로자는 보호자의 동의로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 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인력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수수료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5. 회사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제5조 【차별 금지】**

1. 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직원의 채용 승진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6조 【인권보호】**

1. 모든 근로자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이 보호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근로자는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3. 정기적인 인권경영 점검하고 인권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어야 한다.

#### **제7조 (결사 자유보장)**

1. 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며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

#### **제8조 【윤리적인채용】**

1. 회사는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를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가 고용을 명분으로 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 **제 2 장 산업안전 · 보건**

#### **제9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1. 회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 관련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 업무절차, 교육 등을 점검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 【기계기구 관리】**

1. 회사는 사업장내 기계, 기구, 설비의 사용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2. 사업장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가 지급되어야 한다.

#### **제11조 【비상상황 대응】**

1. 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제12조 【사고관리】**

1. 회사는 산업재해 중대한 질병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임직원의 대피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 【안전진단】**

1. 사고위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지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위험성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4조 【보건관리】**

1.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

고 평가하여 통제해야 한다.

3.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4.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5.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등의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 제 3 장 환경

### 제15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1. 기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제16조 【온실가스 배출량관리】

1.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7조 【수자원관리】

1.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은 법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18조 【대기오염물관리】

1.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또는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 제19조 【폐기물관리】

1.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량은 최소화해야 한다.

#### **제20조 【화학물질관리】**

1.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표기 관리해야 한다.

#### **제21조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1. 회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 4 장 윤리**

#### **제22조 【투명경영 반부패】**

1.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횡령이 허용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한다.
2.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
3.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 내부고발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3조 【불공정 거래방지】**

1. 회사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3.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 **제24조 【위조품 사용방지】**

1. 승인되지 않은 위조된 부품 등이 사용 판매 되어서는 안 된다.

#### **제25조 【정보보호】**

1.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고객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 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취급자는 정규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회사는 협력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해야 한다.

#### **제26조 【책임 있는 원자재관리】**

1.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코발트)과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급망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자재 및 부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 5 장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 **제27조 【담당자 선임】**

1. 지속가능성 업무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2. 지속가능 경영활동 계획수립과 이행현황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 **제28조 【위험 점검】**

1.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위험성



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완화하기 위한 대책수립 이행해야 한다.

### **제29조 【교육 및 소통】**

1. 행동규범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윤리, 환경, 노동인권, 산업재해 분야의 지표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3.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고객사 등에서 해당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제30조 【고충처리제도 운영】**

1. 임직원이 노동, 인권, 안전, 보건 환경, 윤리 분야의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 또는 인지되면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 고충처리 제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 **제31조 【규범준수】**

1. 행동규범에 관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점검 시 신화로직스가 지정한 제3자가 실시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가 입증할 수 있는 실제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협력사 점검에서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2조 【공급망실사】**

1.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평가 시 수용해야 한다.

2. 실사 결과에 대한 위험요소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응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